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11.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나. 회부일자 : 1999. 11.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99. 11. 1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가. 제안이유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규정된 공동사업형태를 가구별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주민지원사업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 명시(안 제8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p>○ 조례 제8조를 신설하는 이유는?</p>	<p>○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인근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공동으로 하던 것을 도시가스사업과 건축물 도색사업을 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하므로 가구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사항임.</p>

- 소각장 등으로 피해를 받는 것인데 가스사업이나 도색사업을 하는 것보다 정기적인 특수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 조례 제8조2항의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생계라 함은 가스, 수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비용, 문화사업비, 교육사업비, 기호품을 사용하는 비용이므로 가스사업, 도색사업도 생계를 위한 보조금에 포함되므로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주변지역 주민협의체 대표와 협의하여 가능도록 하겠음.
- 생계에 가스, 수도광열비 등이 포함되는 사항이라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234호
의결년월일	99. 11. 12 (제74회)

제출년월일 : 1999. 11. 11

제출자 : 건설교통위원장

#### □ 수정이유

-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가구별 지원사업으로 도시가스사업과 건축물 도색사업으로 하며, 다만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한

- 단서규정에서 생계라 함은 가스, 수도광열비, 의식주 해결을 위한 비용에 문화사업비, 교육사업비, 기호품 사용을 위한 비용이므로 도시가스사업, 도색사업도 생계를 위한 보조금에 포함되므로 단서규정으로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에 불합리하므로 삭제.

### 주요골자

- 개정조례안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제2항 “다만, 생계를 위한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삭제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9조 내지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사업과 도색사업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은 시장과 주민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설)	<p>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p> <p>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 할 수 있다.</p>	<p>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p> <p>①(개정안과 같음)</p>

####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네지 제10조”를 “제9조 네지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간접영향

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이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사업과 도색사업으로 하고 기타 필요한 사업은 시장과 주민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일인 1995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